

공유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6조를 위반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(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)에 대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정읍시장



1. 공 고 명: 공유재산 내 불법경작,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5. 29. ~ 2026. 6. 13.(15일간)
3. 공고 및 게시장소: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
4. 공시송달 대상(불법현황)

위치		불법행위 현황		불법내용	비고
소재지	번지	행위자	주소		
정읍시 수성동	378, 산65-14, 378-9	미상	미상	불법경작, 무단적치(비닐, 지지대, 대야 등)	

5. 공시송달 공고내용 [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]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의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내 불법 경작 및 무단점유를 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. 7. 31.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이 없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점유물 철거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,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같은 법

-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의견제출: 정읍시 산림녹지과 공원팀(063-539-5772)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1부.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3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